

서울고등법원 2014. 11. 4 선고 2014나200771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4. 11. 4 선고 2014나20077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합5176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4. 9. 23.

판결 선고 2014. 11. 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합51766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A과 피고가 2012. 11. 6. 체결한 매매계약을 263,273,9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63,2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A과 피고가 2012. 11. 6. 체결한 매매계약을 '224,881,399원 및 그 중 38,088,8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178,876,886원에 대하여는 2013. 4. 5.부터 각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4,881,399원 및 그 중 38,088,8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178,876,886원에 대하여는 2013. 4. 5.부터 각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9. 4. 6. F회사를 운영하는 A과 보증원금 2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0. 4. 6.(이후 2013. 4. 5.로 변경)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이를 담보로 2009. 4. 7.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제1보증'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1. 8. 5. 다시 A과 보증원금 3,760만 원, 보증기한 2012. 8. 3.(이후 2013. 8. 2.로 변경)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이를 담보로 2011. 8. 5. 신한은행에서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제2보증'이라고 한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은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03. 4.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 초과하면 연 16%, 2012. 12. 1. 이후는 일률적으로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A은 2013. 2. 14.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3. 3. 11.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3. 3. 29. 제2보증에 기하여 신한은행에 A의 대출원리금 38,088,800원을, 2013. 4. 5. 제1보증에 기하여 우리은행에 A의 대출원리금 252,939,634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3. 4. 5. 우리은행 대위변제금 중 207,670원을 회수하였다.

2)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1,192,140원을 지출하였다.

다. A의 재산처분

1)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1, 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6.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2012. 11. 19. 접수 제16985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2)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5.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2. 12. 3. 접수 제34554호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A은 2013. 1. 14. 환기용 건식에어덕트에 대한 별지 실용신안권 목록 기재 실용신안권을 자신의 처(妻)인 D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D 앞으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라. 1, 2, 3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1, 2, 3 부동산에는 2011. 8. 22. 접수 제126354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채무자 A, 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A이 위와 같이 1, 2, 3 부동산을 처분한 후인 2012. 11. 19. 하나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마. 원고의 C에 대한 판결 확정 및 C의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

1) 원고는 C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위 2012. 11. 5.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 및 그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A과 C이 2012. 11. 5. 3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4,985,58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C은 원고에게 74,985,587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2) C은 2014. 2. 24. 원고에게 77,547,218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75,047,218원은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판결원금 74,985,587원 + 2014. 2. 19.부터 2014. 2. 24.까지의 지연손해금 61,631원2))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2,500,000원은 소송비용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나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표시가 없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2014. 2. 24. 원고에게 77,547,218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원고는 A에 대하여 총 대위변제금인 291,028,434원(= 제1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252,939,634원 + 제2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38,088,800원)에서 기 회수한 207,670원을 공제한 290,820,764원과 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 1,192,140원의 합계 292,012,904원의 구상금 채권(지연손해금 제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한편 을나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이 지급한 위 77,547,218원 에서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47,218원 중 1,192,140원은 위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에, 나머지 73,855,078원은 제1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의 일부로 각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16,965,686원(= 292,012,904원 - 75,047,218원)이 남게 된다.

그리고 제1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이 앞서 본 것처럼 2013. 4. 5. 207,670원, 2014. 2. 24.

73,855,078원이 각 변제됨으로써 위 각 변제금에 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7,915,713원(= 2013. 4. 5. 변제금에 관한 68원3) + 2014. 2. 24. 변제금에 관한 7,915,645원4))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A에 대하여 제1보증, 제2보증에 기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224,881,399원(= 구상금 216,965,686원 + 확정지연손해금 7,915,713원) 및 그 중 제2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38,088,80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3. 29.부터, 제1보증에 기한 잔존 대위변제금 178,876,886원(= 252,939,634원 - 207,670원 - 73,855,07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4.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한편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였던 A에 대하여 확정된 부분에 의하면, 원고는 A에 대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3. 7. 24.부터는 연 12%가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나,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보전채권 중 지연손해금으로 위 각 금원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5)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2)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위 구상금 등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신용보증약정 체결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이 사건 처분행위 무렵인 2012. 11월부터 약 3달이 지나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13. 3. 29. 및 2013. 4. 5. 결국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구상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피고 A"를 "A"으로 각 고치고, 다음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6면 제11행 내지 제9면 제19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피고는, A이 자금난으로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가 1, 2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1, 2 부동산을 다시 A에게 임대하여 A으로 하여금 이를 공장으로서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A의 채무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6호증, 을나 제21호증의 1, 2, 을나 제22호증 내지 을나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로부터 1, 2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12. 11. 16. A에게 보증금 없이 차임 매월 330만 원으로 정하여 1, 2 부동산을 임대하여 준 사실, 실제로 피고는 2013. 12.까지는 차임으로 매월 220만 원을 받다가 2014. 1.부터는 차임으로 매월 330만 원을 받고 있는 사실, A은 배우자인 D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1, 2 부동산에서 닥트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1, 2 부동산이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경우에 비하여 피고가 1, 2 부동산을 A로부터 매수함으로써 A의 채무변제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피고 A"을 "A"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11면 제12행 내지 제12면 제11행, 다만 제11면 제16행 내지 제21행 제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을나 제15호증의 2,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13면 제5행 내지 제15면 제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14행 내지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24,881,399원 및 그 중

38,088,8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178,876,886원에 대하여는 2013. 4. 5.부터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9. 23.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263,273,900원[= $224,881,299\text{원} + 38,088,800\text{원} \times 12\% \times (1 + 179/365) + 178,876,886 \times 12\% \times (1 + 172/365)$]]이다."

나)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20행 내지 제15면 제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소결론

따라서 A과 피고 사이의 1, 2 부동산 매매계약을 1, 2 부동산 공동담보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263,273,9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263,2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민정석

판사최봉희

별지

1)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원 미만 버림.

3) $207,670\text{원} \times 12\% \times 1/365$

4) $73,855,078\text{원} \times 12\% \times 326/365$

5) 원고의 2014.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같은 날짜의 준비서면 각 참조.